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2
----------	-------

제출년월일 : 2013. 11.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통합관리기금의 정의 내용 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으로 변경(안 제1조)
- 나. 여유자금의 종류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및 예수금 등으로 확대(안 제4조)
- 다. 기금의 용도에 일반회계에 대한 용자내용 신설(안 제6조)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제9조의3)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3. 10. 4. ~ 10. 24(제출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를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기금의”를 “기금 등의”로, “통합 관리”를 “통합관리”로,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금의”를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금이”를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출연·예수금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다른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제6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위원회”를 “각 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금 예탁금에 대하여는”을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은”으로, “기준으로”를 “기준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하여”를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4인”을 “1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제9조제5항제2호 중 “전문인 5인”을 “전문가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1조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 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매 회계연도 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마포구의 회”를 “구의회”로, “언어야한다”를 “언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를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를 “구금고”로 한다.

제1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li> <li>2. “여유자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을 위한 필요한 자금 등</li> </ol>	<p>제1조(목적) ----- -----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 기금 등의 ----- ----- ----- 통합관리 ----- ----- ----- 관리에 ----- ----- -----.</p> <p>제2조(정의) ----- ----- ----- 1. -----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 ----- -----.</p> <p>2. ----- ----- -----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 -----</p>

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구금고”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4. (생략)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예탁금 자금

2. 타기관, 단체로부터 출연·예탁금

3. (생략)

<신설>

-----  
-----.

3. -----  
-----  
----- 제14조 -----  
-----.

4. (현행과 같음)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  
-----  
-----  
-----  
----- 통합관리기금 -----  
-----.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  
-----  
-----.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출연·예수금

3. (현행과 같음)

4.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기타 수익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생략)
2. 타기금 및 주차장 등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4. (생략)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제7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① 제7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 예탁금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

5. 그 밖의 수익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  
-----  
-----.

1. (현행과 같음)
2. 다른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  
-----

제7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  
-----  
-----.  
----- 각 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  
-----  
-----.

제8조(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① ----- 따라 -----  
-----  
-----.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은 -----  
----- 기준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



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 5. (생략)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생략)

⑤ 위원은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 의원

-----  
-----  
-----  
-----  
-----  
-----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

② ----- 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③ ----- 14명 -----

④ (현행과 같음)

⑤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이

2인

2.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인 5인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2. -----

----- 전문가 5명

⑥ -----

----- 1명-----

-----.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

단될 때

-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 5.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타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  
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  
성된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

제11조(위원의 임기) -----  
----- 한  
차례만 연임-----.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  
-----  
-----  
-----  
-----  
-----.

② 그 밖에 ----- 운영  
에 -----  
-----.

제13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 회계연도  
마다 -----  
-----  
-----  
-----  
-----.

② ----- 따라 -----  
-----

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  
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  
리) ①·② (생략)

③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마포구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  
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  
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계연도마다 -----

구의회----- 얻  
어야 한다.

제14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  
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재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 외-----  
--.

④ -----  
구금고-----  
--.

제15조(수당) -----  
-----  
----- 범위-----  
-----  
-----.

제16조(회의록의 비치) ① -----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 시행  
에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3. 미첨부 사유

-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이 확대되고 그 용도가 여유자금의 용자의 성격임
- 기금의 활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즉각적인 비용발생은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김지연
연 락 처	02-3153-8514